

2017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7년 11월 3일(금) 14:00~16: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1명) : 11명 중 10명 참석

4. 안건

□ 심의

-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2)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자문

- 1) 2017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보고

- 1) 대학원 장학규정 개정(안)
- 2)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3) 직제 규정 개정(안)
- 4)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5)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6)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개정(안)
- 7)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8) 강의전담교원 규정 제정(안)
- 9)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안)
- 10)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정(안)
- 11) 노천극장 멸실

5. 회의 내용 및 결과

● 심의 안건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대학원/정보콘텐츠대학원/경영대학원 교학팀장이 각각 설명하다.
- 경영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와 스마트융합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중복을 언급하였으며, 기존 경영대학원에 있는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재적 중인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를 유지하고, 2018학년부터는 경영대학원이 아닌 스마트융합대학원에 있는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 스마트융합대학원 정원이 48명인데 학과/전공이 너무 많음을 언급하였고, 현재 모집정원 대비 50% 밖에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과/전공을 개정하여 신입생 모집을 확대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스마트융합대학원 ‘스마트시스템학과’의 학위 명칭이 ‘공학석사’이나, 학위 명칭을 단순히 공학석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고, 추후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다.

● 자문 안건

1) 2017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조정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수입 대비 지출로 추가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였으며, 건설가계정으로 분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운영비 성격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약 70억 정도임을 답변하다.
- 법인 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지급에 관하여 법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현재 1차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전입금 실적이 잡히지 않음을 설명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에서 법인책무성 관련 지표(안)을 법인 이사장께 보고를 하였으며 법인관련 지표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논의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미사용 전기이월금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건설 사업이 회기년도를 걸쳐서 이루어지다보니 회기와 회기 사이의 금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되는 금액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2018년부터 10년간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매년 약 15억~20억 정도를 상환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자문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 보고 안건

1) 대학원 장학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이는 교수의 연구 성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함
대학원 발전을 위해 장학 제도 등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학교의 정책 수립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다.
신임교수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다.

2)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3) 직제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4)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5)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교수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 출산휴가 기간 중 연구 분야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인지 질의하였으며, 출산휴가 중인 교원이 연구실적을 평가에 포함할 지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끔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 여성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기간 중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 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같은 취지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해당 규정 적용을 검토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에 한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향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다.

- 본 개정(안)이 교육전임이나 특별전임교원에도 적용이 되는지 질의하였으며, 교수지원팀장이 본 개정(안)은 일반전임교원에만 적용되나 향후 타 전임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6)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개정(안)

- 교수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7)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수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8) 강의전담교원 규정 제정(안)

- 교수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9)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 타 대학의 경우 기숙사를 중도 퇴사하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학교는 환불 규정이 어떠한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다.
- 회의 종료 후 생활관 운영팀에 확인한 결과 ‘생활관 수칙’에 따라 향후 환불을 적용할 것임을 확인하였고,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다.

*생활관 수칙 [별표1] 1. 중도 퇴관 환불 기준

입관유형	생활관비 환불기준	비고
학기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단, 입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음 학기 입관 불가
6개월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단, 퇴실학기 공식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로는	
1년	환불되지 않는다.	

10)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11) 노천극장 멸실

-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